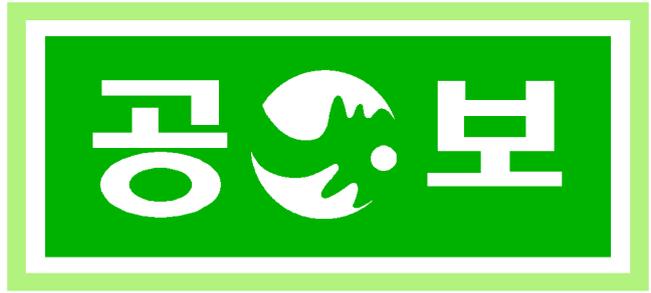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1008 호 2016. 5. 19. (목)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72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73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83호[도로명주소 고시]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84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1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 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6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7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자신과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2.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부동산과 관련된 직무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관련분야
 2. 도시개발·택지개발 관련분야
 3. 산업단지·농공단지 관련분야
 4. 주택·도시주거환경정비 관련분야
 5. 도로·철도·항만·공항시설 관련분야
 6. 관광개발 관련분야
 7. 공유수면 관련분야
 8. 유통산업 관련분야
 9. 투자유치 관련분야
 10. 국·공유재산 관련분야
 11. 그 밖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나 개발사업 관련 분야
- ③ 제2항의 직무분야와 관련한 부동산의 보상 시 관련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1인당 3만원”을 “3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 중 “1인당 3만원”을 각각 “3만원”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무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구청장, 부구청장 및 실·국·소·과·동장의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속기관 또는 부서”를 “소속기관이나 소속기관 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받은”을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제2항 관련)****<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장·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장관급) · 300(차관급)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장관급) · 200(차관급)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2016. 2. 12)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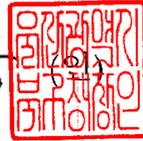
2. 주요내용

-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제2조)
- 나. 직무의 회피 대상자 추가(제5조)
- 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직무분야 등 신설(제12조)
- 라. 해석상 혼란 소지가 있는 문구 삭제(제14조)
- 마.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시간 제한 및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신설 및 개정(제15조 및 별표)
- 바. 경조금품 수수제한 제외대상 축소(제17조)
- 사.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규정 신설(제21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6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
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을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
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6조제5항”을 “조례 제7조제4항”으로 한
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위·해촉)”을 “(위원의 위촉·위촉 해제)”로 하고,
제6조제2항 본문 중 “조례 제7조제4항”을 “조례 제8조제4항”으로, “해촉
할”을 “위촉 해제 할”로, “해촉할 수 있다”를 “위촉 해제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해촉대상자”를 “위촉
해제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12조제3항”을 “조례 제13조제3항”
으로 한다.

제13조제7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모집인원 등 근거 조항을 상위 조례에 맞게 개정 (제3조)
- 위원 위촉·위촉해제에 관한 근거 조항을 상위 조례에 맞게 개정 (제6조)
- 분과위원회의 종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상위 조례에 맞게 개정 (제8조)
- 위원회 방청인의 퇴장에 관한 조항을 내용에 맞게 개정(제13조)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83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양동2길 5-4(양정동)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시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5. 1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	도로명부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38-11 연암동 1762-9에 3월시 (1262-101262-11,1262-12)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4(양정동)	2016-05-19	예로부터 양정동은 양정, 양동, 지전마을로 각각 나뉘어 불리왔던 곳으로 지역의 특성을 부여하고 차양동이라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80-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1(연암동)	2016-05-19	음신의 신업을 펼쳐 화 시가지는 취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6-18	
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80-1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5길 34(연암동)	2016-05-19	상방마을 영주때 상동리나 풀리 상방마을의 유래가 되었고 역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4	울산광역시 북구 전북동 927	울산광역시 북구 논개로길 46-1(전북동)	2016-05-19	예산 지방인 논개은 방정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5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745-165	울산광역시 북구 재내5길 18-1(신전동)	2016-05-19	기존 자연마을인 재내마을에 유지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6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동 1445-1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36-6(화동동)	2016-05-19	지전부락 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0-04-27	
7	울산광역시 북구 이물동 195-3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787-2(이물동)	2016-05-19	이 지역의 지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84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상방5길 34(연암동)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 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05. 19.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5길 3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80-1	2016-05-19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탈레골길 46-12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	2016-05-19	건축물 멸실	